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2. 13 선고 2019가단18608 판결 [공사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0. 1. 30

판결 선고 2020. 2. 13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8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8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이영풍